

##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 (CeBIT) 참가 안내

세계최대의 정보통신 전문전시회인 하노버 세벳에 한국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국내 전자정보통신산업의 대표기관인 본회와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02.3.13~3.20까지 8일간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CeBIT 2002'에 아래와 같이 한국공동관을 구성할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회일정 : 2002. 3. 13(수) ~ 3. 20(수), 8일

□ 모집부문

- (IT부문)컴퓨터 및 주변기기, 입출력장치, 저장장치, 케이스, 전원 공급장치, 모뎀, 모니터, 컴퓨터응용기기 등
- (Automatic Data Capture)음성인식, 지문인식, 바코드, 웹카메라, ID카드, OCR, 출입통제시스템, 카드리더, 자동응답기, 라벨프린팅, 무선주파수확인, 비전시스템 등

□ 모집규모

45개사 60부스(1부스/9sqm)

□ 참가비 및 신청

520만원/부스 (일시불)

전시사업팀 강홍식과장

T : 553-0941(241), E-mail : kes@kes.org

## 홍콩 TechWorld 2002 참가안내

홍콩 科技园 (HKSTP, Hong Kong Science & Technology Parks)은 2002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에서 TechWorld 2002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인터넷, 통신, 전자상거래, 멀티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자본투자자, 관련 업체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본회는 국내 전자정보업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동 행사의 참가를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명 : TechWorld 2002

• 일 시 : 2002. 3. 19 ~ 3. 20(이틀)

• 주 제 : "Connecting you with capital and marketing partners"

• 장 소 : 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 주 최 : 홍콩 科技园

(HKSTP, Hong Kong Science & Technology Parks)

• 성 격 :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자본과의 결합, 관련 기업간 조인트벤처 논의, 對중국 투자 모색, 해외 마케팅 강화 등 Business Matching 프로그램

• 분 야 : Information Technology, Internet & E-commerce  
Telecommunications  
Software & Systems

Multimedia and Networking

Biotechnology

Microelectronics and critical components 등

• 문 의 : 관련 홈페이지

(www.techworld2002.org, www.hkstp.org)

본회 국제통상팀

(T. 553-0941 교환 211-213, F. 563-7339)

## 2001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사업의 운용계획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중 기술력이 우수한 10대 신기술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

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 발전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한 「2001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사업」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목적

국내에서 당해연도에 개발된 기술중, 기술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탁월한 10개의 기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홍보하므로써, 첨단 신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기술개발 분위기를 확산함

### 2. 대상 기술

- 정보, 통신, 생명과학 등 7개 분야의 실용화된 기술
  - 정보·전자·통신 : 이동통신, 센서, 반도체, 광기술 등
  - 기계·설비 : 정밀기계, 산업기계, 환경설비 등
  - 소재·공정 : 금속, 세라믹, 정밀화학소재 등
  - 에너지·자원·원자력 : 대체에너지, 해저자원 기술, 원자력기술 등
  - 생명 과학 : 생명공학, 유전공학, 생체공학 등
  - 환경·지구과학 : 환경오염방지, 지질, 대기환경 등
  - 건설기술 : 토목구조,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 각 부처에서 인증한 신기술
- 2000년 10월 이전에 개발완료된 기술은 제외

### 3. 선정 절차

- 신청
  - 기술개발 업체에서 직접 신청
  - 신청기간 : 2001. 11. 1~2001. 11. 30
  - 접수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본재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02-509-7270~7)
  - 제출서류(원본 1부, 사본 5부)
    -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신기술 설명서(별지서식 제2호)
- 전문위원회 심사(개별심사)

- 신청된 기술을 7개 전문분야별로 분류
-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문가가 기술성 및 경제성을 심사하여 선정기술 2배수 정도로 압축
-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심사를 병행 (단, 현지심사는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기술에 국한)

### □ 선정위원회 심사(종합심사)

- 전문위원회에서 압축한 기술을 각 분야 전문가가 합동으로 심사하여 10개 기술 선정

### 4. 심사기준 및 방법

#### □ 서류심사

- 기술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을 평가
  - 기술적 측면 : 독창성, 기술집약도, 첨단기술성, 선진기술과의 우수성 비교, 고유설계 기술, 국산화율 등
  - 경제적 측면 : 수출액, 국내시장점유율, 세계시장점유율, 수입대체효과, 원가절감효과, 환경친화성 등

#### □ 현지심사

- 서류심사 기준과 동일하며, 각 평가항목의 사실여부 확인
-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기술에 한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과 기술원 담당연구관이 실시

#### □ 선정

- 서류심사와 현지심사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5. 2001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일정표

- 사업계획 홍보 : 2001. 5~2001. 10
- 신청서접수 : 2001. 11. 1~2001. 11. 30(1개월간)
- 평가심사 : 2001. 12. 4~2002. 1. 22
  - 서류심사
  - 현지심사
  - 선정위원회 심사
- 10대 신기술 증서수여 : 2002년 1월 30일

# 계 시 판

- 산업자원부 장관명의로 증서수여

의장권, 상표권의 분쟁

[발명진흥법 제29조의4를 제외한 등록된 산업재산권 분쟁]

## 6. 선정 기술에 대한 홍보 지원(계획)

- 일간지, 경제지, TV 등을 통한 대대적 홍보
- 선정된 기술의 개발내용을 영문으로 제작, KOTRA 해외무역관, 관련단체 및 업계등 수요처에 배포하여 홍보

### 다. 조정위원 구성

- 조정위원은 산업계, 학계,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특허청 공무원 등 20명으로 조직되어 있음
- 조정위원 중에서 양 당사자가 지명한 3명의 위원으로 담당 조정부를 구성·운영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및 「특허법률구조사업」 이용안내

###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과학,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산업에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쟁시 재판에 의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개인 권리자 또는 영세업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하더라도 적절한 구제수단을 찾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첨단기술분야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분쟁내용이 고도화, 복잡화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간이 중재·조정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쟁의 효율적인 알선·조정을 위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쟁 발생시 신속·간편·경제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 기구명칭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나. 조정신청 대상

-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 라. 조정제도 이용시 이점

- 조정위원들이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들이므로 분쟁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정.
- 최근에는 인터넷 정보 이용의 확대에 따른 상표권과 도메인네임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동 제도의 분쟁해결 영역을 넓힘.
-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장기간(2~4년)이 걸릴 분쟁이 단기간(2~3개월) 내에 해결.
-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조정신청 비용이 무료이므로 분쟁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고 당사자의 권익이 보호됨
- 조정과정에서 쌍방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Cross-License 계약, 기술협력계약 등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분쟁당사자간에 악감정을 남기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을 보게되므로 기업간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됨

마. 조정의 효력 :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민법상 화해 계약』이 성립됨

바. 조정신청 방법 : 소정의 조정신청서 서식에

따라 특허청에 제출 (신청비용 : 무료)

사. 문 의 처 :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관리국 산업재산보호과)  
☎ (042) 481-5187,  
FAX (042) 472-3465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학생(대학생 포함)
- 국가보훈 대상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 대상자 등)

## 2. 『특허법률구조사업』

개인발명가 및 영세한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특허법률에 관한 무료 상담을 비롯한 당사자간 화해·조정, 알선 및 심판과 소송의 대행에 관한 법률적 구조사업이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 및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주 사업의 내용으로는 특허관련 법률 무료 상담, 분쟁 당사자간 협의조정 유도 및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대한변리사회, 한국산업재산권 보호협회를 통한 심판 및 소송의 무료 변리·변호 지원, 심판 청구료(권리범위확인심판) 감면 및 소송비용 일부 지원 추진 등이다.

### 가. 적용범위 및 대상

- 적용범위 :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 적용대상
  - 영세한 소기업
  -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하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위 업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개인발명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상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나. 사업의 절차

- 법률상담 :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산업재산권 보호협회에서 무료 상담
- 분쟁 당사자간 협의조정 유도
  - 당사자간 협의조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 성립시 수입료는 무료
- 산업분쟁조정위원회 경우
  - 추진기구에 의한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경유하게 하여 심판·소송 단계 이전에 해결을 유도
- 심판·소송의 대행
  - 관납수수료 등 극히 제한적 비용만을 제외한 무료 변리
  - 의뢰인 승소시 배상금 등의 일정액을 사업 실시 기관에 납부
  - 2001년부터 특허청에서는 동 사업을 통해 접수되는 특허심판 수수료에 대해 70%의 감면혜택을 부여

다. 사업의 집행기관 : 대한변리사회,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

라. 신청 방법 : 소정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사업 집행 기관에 제출(신청비용 : 무료)

마. 문 의 처 : 특허청 관리국 산업재산보호과  
☎ (042) 481-5187,  
FAX (042) 472-3465